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 2011. 6. 8 조례 제1783호
 일부개정 2012. 3. 8 조례 제1838호
 일부개정 2016. 9. 26 조례 제2195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7. 31 조례 제2372호(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4. 4. 5 조례 제31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 청소행정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6>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법에 의해 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 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

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법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평가대상 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2. 3. 8>

제2장 평가절차

제7조(평가지침)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1월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기관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2024. 4. 5>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현장평가단은 현장방문을 통한 바른 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다. <신설 2012. 3. 8>

제3장 평가위원회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4. 4. 5>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별표 2]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광명시의회 의원 2명 이내
 3.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학위소지자,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회원 4명 이내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이 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수립·평가관련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된

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하여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8, 2024. 4. 5>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및 대행계약 해지를 포함

한다. <개정 2024. 4. 5>

제2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2조 및 제23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별표 2]에 따른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8, 2024. 4. 5>

1. 삭제 <2024. 4. 5>
2. 삭제 <2024. 4. 5>
3. 삭제 <2024. 4. 5>
4. 삭제 <2024. 4. 5>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8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4. 4. 5 조례 제3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전 별표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4.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제9조 제2항 관련)

1. 평가시기 및 횟수

- 가. 주민만족도 평가 : 연1회 (연중)
- 나. 평가단 현장평가 : 연1회 (연중)
- 다. 실적서류평가 : 연1회 (연중)

2. 평가 방법 및 배점

- 가. 평가방법(3단계) :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 나. 배점(총점 100점)

총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비고
100	30	40	30 (2)	가점 2점

다. 평가항목

(1) 주민만족도 평가

- 평가 내용 : 올바른 수거, 생활환경 보전, 시민편의, 종합만족도
- 평가 방향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

(2) 평가단 현장평가

- 평가 내용 : 수거구역 현장평가, 차량관리, 적환장 및 주차장 관리, 작업자의 위생·안전
- 평가 방향 :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해 수거 후의 주택 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적환장,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

(3) 실적서류 평가

- 평가 내용 : 긴급수거 등 민원대응,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행정처분 이행, 지자체사업 협력, 지역사회 기여)
- 평가 방향 :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

라. 위 나목 및 다목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마. 위 나목 배점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항목별 ±10점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신설 2024. 4.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
(제13조, 제23조 및 제26조 관련)

등급	평가점수	적 용
탁월	90점 이상	표 창 (1~3위 업체 및 근로자)
우수	80점 이상 ~ 90점 미만	
보통	70점 이상 ~ 80점 미만	개선명령 및 관리감독 강화
미흡	60점 이상 ~ 70점 미만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부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